

전임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및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총장으로 선임되어 그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전임총장으로서 현임 총장의 직전 총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 전임총장은 대학 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① 전임총장은 우리 대학의 제 의식에 있어서 총장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 전임총장의 보수는 재직당시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전임총장의 주당 강의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임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대학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 전임총장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예우) 전임총장에게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차량 및 사무실 제공
2. 기타 전임총장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